

제 19 장 분쟁해결

제1절 - 분쟁해결

제19.1조 협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과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강구한다.

제19.2조 적용 범위

-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 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관한 경우, 또는
 - 나.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기존의 또는 제안된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불합치할 수 있거나 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

제19.3조 분쟁해결 절차의 선택

1.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협정 또는 승계협정 하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은 제소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
2. 일단 분쟁해결절차가 제19.6조에 따라 개시되었거나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개시된 경우에 선택된 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사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일방 당사국의 패널설치 요청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9.4조 협의

1. 일방 당사국은 이 협정의 운영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기존의 조치나 제안된 조치 또는 그 밖의 다른 사항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일방 당사국은 사안에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협정 규정을 제시하고, 요청서를 타방 당사국에 전달한다.

3. 부패성 농산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협의는 요청이 전달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작한다.

4. 양 당사국은,

가. 기존의 조치나 제안된 조치 또는 다른 사항이 이 협정의 운영 및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제19.5조 주선, 조정 및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합의시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와 관련한 절차와 특히 당사국이 이러한 절차동안 취하는 입장은 그 비밀성이 보장되고 이것이 동 절차에 따른 모든 추가 과정에서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일방 당사국에 의해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는 언제라도 개시될 수 있고 종료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가 당사국간의 합의 없이 종료되면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6조 중재 패널 요청

1. 분쟁사안이 다음의 기간 내에 제19.4조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일방 당사국은 중재 패널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가. 협의 요청의 전달 후 45일 이내,

나. 부패성 농산물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 요청의 전달 후 30일 이내,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내.

2. 당사국은 또한 제8.12조에 따라 협의를 개최한 경우 중재 패널의 설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3. 요청서가 전달된 때, 중재 패널은 설치된다.

4. 양 당사국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9.7조 명부

1.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15인까지의 명부를 작성하되, 이 중 3분의 1은 어느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도 아니되며, 패널위원으로서의 의지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명부 구성원은 3년 임기로 임명되고, 어느 일방 당사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3년의 추가 임기로 자동 재임명된다.

2. 명부 구성원은,

가. 법률, 국제무역,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제기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다. 양 당사국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하고, 당사국과 특수관계가 있거나 당사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이 협정의 부속서 19.7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제19.8조 패널위원의 자격

1. 모든 패널위원은 제19.7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당해 분쟁해결을 위해 제19.5조에 따른 절차에 참여한 인은 당해 분쟁의 패널위원이 될 수 없다.

제19.9조 패널 구성

1.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 요청서의 전달 후 15일 이내에 1인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3.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15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의장에 대해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의장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의 의장이 5일 이내에 패널명부에서 당사국 국민이 아닌 인 중에서 추천으로 선정한다.

4. 일방 당사국이 제2항에 제시된 기간 이내에 자국의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의 의장이 5일 이내에 패널명부에서 그 당사국 국민인 인 중에서 추천으로 선정한다.

5. 패널위원은 통상적으로 명부로부터 선정된다.

6. 일방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부속서 19.7조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 당사국은 이에 대해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해임되고 새 패널위원이 이 조에 따라서 선정된다.

제19.10조 모범절차규칙

1.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부속서 19.10에 규정된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그 절차를 수행한다.

2. 자유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시 제1항에 언급된 모범절차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19.11조 정보 및 전문적 조언

패널은 당사국의 요청이나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 및 전문적 조언은 의견 접수를 위해 당사국에 제출한다.

제19.12조 최초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패널 보고서를 양 당사국의 서면입장 및 주장과 제19.11조에 따라 패널이 획득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가. 부속서 19.10 제8규칙의 요청에 따른 조사결과를 포함한 사실조사결과,
나.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합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또는 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패널의 판정, 또는 위임사항으로 요청된 다른 판정, 그리고

다. 분쟁의 해결을 위한 패널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권고.

3. 패널위원은 전원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후 14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제4항에 규정된 의견이 접수된 경우 패널은 자체 발의로 또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으로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러한 서면 의견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13조 최종 보고서

1. 패널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전원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별도 의견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당사국에 제출한다.

2. 패널은 최초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에서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견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당사국에 전달된 후 15일 이내에 공중에 이용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제19.14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고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지정한 방식과 기간내에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결정을 이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최종 보고서가 해당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않거나 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경우, 피소국은 가능한 한 그 조치의 실행을 중지하거나 그 조치를 폐지한다.

제19.15조 불이행 - 혜택의 중지

1. 제소국은 패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경우 피소국에 대해 동등한 효과를 가진 혜택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가. 조치가 이 협정상 의무에 불합치하고 최종 보고서에 기술된 기한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피소국이 최종보고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조치가 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하고 양 당사국이 최종보고서에 기술된 기한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분쟁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사안에 따라 피소국이 패널의 최종보고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분쟁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혜택의 중지는 계속된다.

3. 제1항에 따라 어떠한 혜택을 중지시킬 것인가를 고려할 때,

가. 제소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서 도출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거나 또는 부속서 19.2의 의미에서 침해 또는 무효화를 야기한다고 단정한 조치 및 그 밖의 관련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의 중지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

나. 제소국이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소국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제소국은 그러한 결정의 발표시 그 결정이 기초로 하고 있는 근거를 적시한다.

4. 관계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원패널은 제소국이 중지한 혜택의 정도가 제1항에 비추어 과도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그러한 패널이 원래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어질 수 없는 경우 제19.9조에 마련된 절차가 적용된다.

5. 패널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후 60일 이내에 또는 원래의 위원으로 패널이 구성되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판정을 제출한다. 패널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는다. 이는 자유무역위원회에 전달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다.

제2절 - 국내 절차와 민간 상업분쟁 해결

제19.16조 사법적 및 행정적 절차에서의 협정의 해석

1. 일방 당사국의 국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문제가 제기되고, 그 당사국이 당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거나 당해 사법 또는 행정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일방 당사국의 견해를 요청한 경우, 당해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적절한 답변에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사법 또는 행정 기관이 소재한 영역의 당사국은 그 기관의 절차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합의된 해석을 동 기관에 제출한다.

3.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국이라도 당해 사법 또는 행정 기관의 절차규칙에 따라 동 기관에 자국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

제19.17조 사적인 권리

어느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근거로 사적 당사자가 타방 당사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18조 대안적 분쟁 해결

1.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사적 당사자들 간에 국제상업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와 그 밖의 대안적인 분쟁해결수단을 활용하도록 가능한 한 최대한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른 분쟁에서의 중재 관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재 협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

3. 어느 당사국이 1958년 외국중재관정에관한승인및집행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회원국이고 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면 제2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19.2
무효화 또는 침해

1. 일방 당사국이 다음의 규정에 의하여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혜택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의 적용의 결과로서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 가. 제2부,
- 나. 제11장, 그리고
- 다. 제15장.

2. 양 당사국은 제20.1조에 따른 예외에 해당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을 원용할 수 없다.

- 가. 제2부의 국경간 서비스 무역 규정으로부터 혜택이 발생하는 범위내에서의, 제1항 가호 또는 다호, 또는
- 나. 제1항 나호.

부속서 19.7 패널위원의 행동규범

정 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원이라 함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그 위원을 위해 조사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인을 말한다.

위원이라 함은 제19.6조에 따라 유효하게 설치된 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후보라 함은 제19.7조에 언급된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제19.9조에 따라 패널위원으로 지명이 고려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패널절차라 함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 제19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직원이라 함은 패널위원과 관련하여, 보조원 이외에 패널위원의 지시와 감독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제1절 - 패널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후보 및 위원은 부적절한 태도와 부적절하게 보여지는 것을 삼가 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회피하고, 행위에 있어 높은 품격을 유지하여 분쟁해결 절차의 완전성과 공정성이 보존되도록 한다. 전임 위원들은 이 행동규범 제5절와 제6절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 공개 의무

3. 이 협정 제19.9조에 따른 패널위원 선정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는 자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패널절차에서 부적절함 또는 편견의 외관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문제를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4. 일단 위원으로 선임되면, 위원은 규칙3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며, 이러한 이해, 관계 및 문제를 공개한다. 이러한 공개 의무는 위원이 패널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이해, 관계 및 문제를 공개할 것을 위원에게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위원은 그러한 이해, 관계 및 문제를 양 당사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공개한다.

제3절 - 후보 및 위원의 임무수행

5. 위원 선임을 수락하는 후보는 패널절차 전체 기간을 통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를 수행한다.

6. 위원은 모든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7. 위원은 이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8. 위원은 다른 위원이 패널절차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기회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9. 위원은 패널절차에서 제기되고 판정에 필요한 사안만을 고려하고, 판정 임무를 다른 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

10. 위원은 자신의 보조원 및 직원이 이 행동규범의 제1부, 제2부 및 제6부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1. 위원은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와 배타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12. 후보나 위원은 이 행동규약에 대한 실제의 또는 잠재적 위반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의견교환이 자유무역위원회에 대한 것이거나 자신이 이 규약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 위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13. 위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위원은 공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부적절함이나 편견을 자아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14. 위원은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대중적 요구, 일방 당사국에 대한 충의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5. 위원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원의 적절한 임무수행을 간섭하게 되거나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의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혜택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락하지 아니한다.

16. 위원은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패널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막거나 저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7. 위원은 과거의 또는 기존의 재정, 사업, 직업, 가족, 사회 관계 또는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18. 위원은 자신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부적절함이나 편견의 외관을 만들 수 있는 관계를 맺거나 또는 그러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절 - 일정한 상황에서의 의무

19. 위원 또는 전임 위원은 자신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편견이 있었다거나 자신이 패널의 결정이나 판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외관을 만드는 행위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절 - 비밀성의 유지

20. 위원 또는 전임 위원은 패널절차상의 목적을 제외하고 패널절차와 관련되거나 그 절차상 획득한 비공개 정보를 언제라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21. 위원은 패널판정이 공표되기 전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2. 위원 또는 전임 위원은 언제라도 패널의 심리나 어느 패널위원의 견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절 - 보조원이나 직원의 책임

23. 이 행동규약 제1절, 제2절 및 제6절은 보조원이나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부속서 19.10 모범 절차 규칙

적 용

1. 이 규칙은 제19.10조에 따라 제정되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9장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적용된다.

정 의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라 함은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을 조언 또는 지원하도록 당사국이 고용한 인을 말한다.

제소국이라 함은 제19.6조에 따른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법정 휴일이라 함은 일방 당사국의 사무국에 대하여,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그 당사국이 이 규칙의 목적상 휴일로 지정하여 자국의 사무국에 통보하고 그 사무국이 타방 사무국과 타방 당사국에 통보한 여타 모든 날을 말한다.

패널이라 함은 제19.6조 하에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당사국 대표라 함은 당사국의 정부부처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의 고용인을 말한다.

책임사무국이라 함은 피소국의 사무국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국이라 함은 제18.2.1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을 말한다.

3. 이 규칙에서 언급된 조, 부속서 또는 장은 이 협정의 해당 조, 부속서 또는 장이다.

패널에 대한 위임 사항

4. 패널 설치 요청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임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패널에 회부된 문제를 조사하고, 제 19.13조와 제19.14조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5. 양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되면 합의된 위임사항을 즉시 패널에 부여한다.

6. 제소국이 어떠한 조치가 이익을 무효화 또는 손상시켰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위임사항에 기술된다.

7. 일방 당사국이 이 협정의 의무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명되거나 부속서 19.2의 의미상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했다고 판명된 조치의 당사국에 대한 부정적 무역효과의 정도에 대한 판정을 패널에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은 위임사항에 기술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8.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의 원본과 사무국이 요구하는 만큼의 최소한 5부 이상의 서면입장 사본을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한다. 그 사무국은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 및 잔여 사본을 책임사무국에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전달하며, 책임사무국은 타방 당사국과 패널에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서면입장을 송부해야 한다.

9. 제소국은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된 후 10일 이내에 자국의 사무국에 제출한다. 피소국은 자국의 서면 반대입장을 최초 서면입장 접수 후 20일 이내에 책임사무국에 송부한다.

10. 규칙 8이나 규칙 9가 다루지 않는 패널절차에 관련된 모든 요청, 통지 또는 다른 문서의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문서의 사본을 모사전송 또는 다른 전자전송 방법으로 양 사무국과 타방 당사국에 전달한다.

11. 패널절차에 관련된 모든 요청, 통지,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상의 경미한 사무 오류는 변경내용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정정할 수 있다.

12. 모든 요청, 통지,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하는 당사국은 가능한 한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그 사무국에 전달한다.

13. 이 규칙에 따른 사무국으로의 모든 전달은 그 사무국의 정상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진다.

14. 일방 사무국으로 문서를 전달하는 마지막 날이 그 사무국의 법정 휴일이거나 또는 그 사무국의 사무실이 정부 명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그 날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그 다음 근무일에 사무국에 전달될 수 있다.

패널의 운영

15. 패널 의장은 모든 패널 회의를 주재한다. 패널은 의장에게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6. 이 규칙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널은 유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7.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은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가의 패널 심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다.

18.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패널은 이 협정에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9. 패널위원이 사망, 사퇴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경우, 패널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후임자를 선임한다.

20.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패널위원이 사망, 사퇴하거나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후임 패널위원이 선임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21.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패널위원의 교체,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당사국의 서면 답변의 경우와 같이 패널절차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절차상 또는 행정상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청문회

22. 의장은 양 당사국, 다른 패널위원 그리고 책임사무국과 협의하여 청문회의 날짜와 시간을 정한다. 책임사무국은 양 당사국에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3. 청문회는 피소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24. 패널은 양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추가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다.

25. 모든 패널위원은 청문회에 참석한다.

26. 다음의 인들은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대표,

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단 이들은 패널에게 발언하지 못하고, 자신 또는 자신의 고용인, 파트너, 업무상의 동료 또는 가족 구성원이 패널 절차에 금전적인 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서 참여,

다. 사무국 직원, 통역사, 번역가 및 지명된 기록원, 그리고

라. 패널위원의 보좌인.

27. 각 당사국은 청문회 개최일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청문회에서 구두변론이나 발표를 할 인사와 청문회에 참석할 대표와 자문인의 명단을 타 당사국과 책임사무국에 제출한다.

28. 청문회는 패널에 의해 제소국과 피소국에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시행된다.

가.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2) 피소국의 주장.

나. 반론과 재반론

(1) 제소국의 반론,

(2) 피소국의 재반론.

29. 패널은 청문회 중 언제든지 어느 당사국에게나 질문할 수 있다.

30. 책임사무국은 각 청문회의 속기록을 준비하며, 작성 즉시 그 사본을 양 당사국, 타방 사무국 그리고 패널에 전달한다.

추가 서면입장

31. 패널은 패널절차중 언제든지 일방 또는 양 당사국에 서면 질의를 할 수 있다. 패널은 책임사무국을 통해 일방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 질의서를 송부하고, 책임사무국은 질의서 사본을 타방 사무국과 타방 당사국에 실현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전달한다.

32. 패널로부터 서면 질의를 받은 당사국은 모든 답변서의 사본을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하고, 그 사무국은 실현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이를 타방 사무국과 패널에게 전달한다. 타방 사무국은 실현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그 답변서를 타방 당사국에 전달한다. 타방 당사국은 동 문서의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33. 청문회 개최일 후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청문회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추가 서면 입장을 자국의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불합치 조치와 예외에 관한 입증 책임

34.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35. 어떤 조치가 이 협정상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정보의 취급

36.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의 청문회, 심의, 최초 보고서, 그리고 패널에 대한 모든 서면입장과 패널과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성을 유지한다.

가. 일방 당사국 또는 그 지시를 받는 그 당사국의 사무국은 그 당사국과 타방 당사국의 서면입장을 일반 대중에게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다호에 따라 일방 당사국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 삭제·편집된다.

나. 일방 당사국 또는 그 지시를 받는 그 당사국의 사무국은 제19.13조 제3항에 따라 최종 패널 보고서가 일반에게 공개된 날로부터 15일 후에 청문회 속기록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속기록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제4항에 따라 일방 당사국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 삭제·편집된다.

- 다. 가호 및 나호에 따라 문서에서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 그 문서는 그러한 정보가 삭제된 각 부분을 명백하게 표시한다.
- 라. 당사국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필수 비밀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내에서,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하거나 패널 청문회에서 제시한 특정 정보를 비밀로 지정할 수 있다.
- 마. 당사국은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사안의 준비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다른 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그 당사국은 그 인들이 그러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 바.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라호에 따라 비밀로 지정하여 패널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와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 사. 책임사무국은 전문가, 통역사, 번역가, 지명된 기록원 그리고 사무국에 의해 고용된 다른 개인들이 패널절차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절차를 취한다.
- 아. 가호 및 나호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 직원은 패널 절차의 비밀성을 유지한다.

일방 당사자 접촉

37. 패널은 타방 당사국이 없는 자리에서 일방 당사국과 만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38. 다른 패널위원이 없는 자리에서 어떤 패널위원도 패널절차의 본안에 대한 어떤 측면에 관해서도 일방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논의하지 아니한다.

공용어

39. 패널절차에 관련된 서면입장, 청문회에서의 구두 변론 또는 발표, 최초 및 최종 패널 보고서, 양 당사국과 패널 사이의 모든 여타 서면 또는 구두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시간 계산

40. 협정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또는 패널의 요청에 의해 어떤 행위가 특정 일자 또는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전 또는 당일에 행해져야 하는 경우, 그 특정 일자 또는 특정 사건 발생일자는 날의 수를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아니한다.

41. 규칙 14의 적용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국이 문서를 수령한 일자와 타방 당사국이 동일한 문서를 수령한 일자가 상이한 경우, 일자의 계산은 그 문서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계산된다.

해택의 중지에 대한 패널

42. 이 모범 규칙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19.15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적용된다.

- 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한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지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초 서면입장을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한다.
- 나. 피소국은 최초 서면입장 전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입장을 자국의 사무국에 전달한다.
- 다. 각 당사국에게 이 협정 및 이 규칙에 규정된 패널절차에 관한 시간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에게 동일한 수의 서면입장 제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입장 제출을 위한 시간제한을 정한다.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은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책임사무국

43. 책임사무국은,

- 가. 패널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나. 전문가, 패널위원과 그들의 보조원, 통역사, 번역가, 지명된 기록원 또는 패널절차에 고용된 다른 개인에 대해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다. 패널위원 선정 확인시 패널위원에 대해 이 협정문, 그리고 통일 규칙 및 이 모범 규칙과 같은 패널절차에 관련된 여타 문서들의 사본을 제공한다.
- 라. 패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무기한 유지한다.
- 마. 규칙 44, 45, 46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 및 비용의 지불

44. 책임사무국은 패널위원과 그들의 보조원, 지명된 기록원 및 패널절차에 고용된 다른 개인에게 지불될 보수와 비용을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45. 규칙 44 하에서 정해진 보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에 의해 균등히 부담되어야 한다.

46. 패널절차에 참여한 각 패널위원 및 다른 인은 자신이 일한 시간과 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누계를 산출해야 하며, 패널은 모든 일반비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최종 누계를 산출하여야 한다.

명부의 유지

47. 양 당사국은 각 사무국에게 제19.7조에 따라 설립된 패널위원 명부를 통보한다. 양 당사국은 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 상대국 사무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